

G-Welfare Weekly Report

01

중앙정부 정책동향

1. 아동학대 · 실종 방지를 위한 초·중등 교육법 개정

01 주요 내용

- 초·중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출석 독촉,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개정 초·중등교육법이 3월 2일부터 시행*
 - 개정법에 따르면 초·중학교 학교장은 취학 예정인 아동이나 재학 중인 아동이 2일 이상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할 경우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방문 실시
 - 독촉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을 2회 이상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아동 거주지 읍·면·동의장과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함
 -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무단결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법은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결석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7일 이상이 될 경우엔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
-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2월 발생한 '원영이 사건'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
 - 신원영 군은 지난 해 1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했고, 한 달 뒤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어 사회적 파장
- 개정법은 초·중등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· 실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
 - 기존에는 7일 이상 무단결석 시 출석을 독촉하도록 하며, 가정방문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결석사유를 확인하고 7일 이상이 될 경우엔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강화

*2월 26일 초·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

02 시사점

- 무단결석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아동확인이 되도록 일선 교육현장의 노력이 더욱 절실
 - 무단결석 시 단순히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하고 관련 내용 동사무소와 교육청에 통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무단결석학생에 대한 교사의 가정방문확인을 통해 실제 학대 · 실종 위험이 있는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교육현장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
- 아동학대 · 실종을 방지할 수 있는 아동안전 검증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
 - 경찰청 · 행정자치부 · 보건복지부 · 교육청 등 데이터를 활용한 아동안전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[출생(병원) → 출생신고(동사무소) → 영유아예방검진 · 예방접종(병 · 의원 · 보건소) → 보육시설 · 양육수당(동사무소) → 초등학교 입학(교육청) → 학교밖청소년(교육청)] 등의 데이터 활용
 - 필요 시 민간기관(아동보호전문기관 ·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· 복지관 등)과도 협력
 -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기록이 없는 810명(전국)의 영유아명단을 확인했으나, 명단에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아동 소재 파악 중 추가로 확인되기도 하였음**

**연합뉴스 (2017.3.6). "출생 신고했는데.. 7년전 버려진 아이 정부도 완전형치"

2. 국민연금 급여액, 4월부터 1%(3,520원) 인상

01 주요 내용

-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후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
- 이번 개정안에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.0%(평균 3,520원) 인상하고,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449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
 -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적정 급여수준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해왔고,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.0%만큼 인상
 - 이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 연 25만2090원, 자녀·부모 연 16만8020원에서 1.0%씩 상향조정하여 각각 2,490원, 1,660원을 인상
 -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이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,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소폭 상향조정
- 또한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*도 포함될 예정
 - 재평가율은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시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로, 올 4월부터 내년 3월 사이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신규수급자에게 적용
- 그러나, 이번 고시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연금가입자에 대한 수령액과 불입액에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소폭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, '용돈연금' **이라는 불명예를 씻기에는 한계
 -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「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역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보험료납부 재개 권한을 확대한 것에 그쳐, 국민의 노후불안과 연금기금 적자 우려를 해소할 만한 변화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
 - 지난 1년간 고령층(55~79세) 인구(12,397천명) 중 44.1%(546만9천명)가 연금을 수령하였으나, 평균 연금액은 51만원에 불과(남자 69만원, 여자 32만원)하고, 소득대체율은 올해 45.5%로 하락
- 최근 기금의 부정운용 의혹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, 일부 대선주자들은 연금 개혁방안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하는 등 19대 대선정국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
 -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%로 되돌리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으며,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겠다는 공약 발표
 -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상으로 인상
- 일회적인 공약으로 관심을 갖기 보다는 노후빈곤문제 해소와 기금운용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가 필요한 시점
 - 노동시장에서 퇴직하였으나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고령자층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 수혜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, 젊은 세대를 위한 실업크레딧 제도 확대
 - 고액세납자(전문직 고소득자, 고소득 자영업자, 연예인 등)의 2016년 보험료 체납액이 7619억 원에 달하지만, 체납자의 징수율은 7%(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자의 징수율은 74%)에 불과한 만큼 이들에 대한 고강도 징수를 통해 기금 안정화 도모

*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

**한국일보 (2017.3.6.), "국민연금 혜택을 올리자" 대선 공약에...불편한 정부"

02 경기도 시사점

-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보완책 추진
 -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나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수혜를 포기한 고령세대(만 55-64세)에 대한 연금재가입을 적극 홍보하고,
 -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도내 취약계층에게 도 차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거나 실업크레딧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보완책 마련

02

사도/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도내 시군별 노인 진료비 실태

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「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」 과 「2015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」 자료를 토대로 도내 시군별 노인 진료비 부담 규모를 비교

- 「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」 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진료비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 -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'15년 한 해 동안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해 지출한 진료비는 총 22조 2,361억 원으로, 지난 '05년 6조 731억 원에 비해 약 3.7배 증가
- 전국 60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전북·전남이 3백 81만 원으로 가장 많고, 서울이 2백 87만 원으로 가장 적어*, 전북-서울에서 1인당 연간 약 1백만 원 차이
 - 전국 시도별 1인당 진료비 규모는 전북 > 전남 > 광주 > 부산 > 경남 > 세종 > 대전 > 경북 > 충남 > 울산 > 제주 > 충북 > 대구 > 인천 > 경기 > 강원 > 서울 순
 - 경기도 내 60세 이상 인구 중 의료보장적용인구는 1,920만 명이며, 연간 총 진료비는 5조 7,112억 원, 1인당 진료비는 2백 97만 원임

*2015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

〈표 1〉 전국 시도별 노인 진료비 현황

	의료보장 적용인구	진료비	1인당 진료비		의료보장 적용인구	진료비	1인당 진료비
경 기	1,919,949	5,711,242,896	2974.6	강 원	357,714	1,057,762,325	2957.0
서 울	1,830,261	5,245,311,215	2865.8	충 북	326,476	1,036,255,374	3174.0
부 산	750,760	2,693,798,672	3588.0	충 남	458,014	1,521,223,204	3321.3
대 구	459,736	1,453,484,819	3161.5	전 북	443,905	1,692,711,764	3813.2
인 천	460,436	1,434,883,780	3116.3	전 남	506,823	1,931,263,311	3810.5
광 주	235,174	872,536,995	3710.1	경 북	655,051	2,176,770,811	3323.0
대 전	242,687	808,244,794	3330.4	경 남	657,395	2,318,102,549	3526.1
울 산	164,951	544,235,306	3299.3	제 주	117,260	383,164,575	3267.6
세 종	31,302	107,036,063	3419.4				

(단위: 명, 천원)

- 경기도 31개 시군의 60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진료비는 동두천이 3백 26만 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가 2백 73만 원으로 가장 적음
 - 31개 시군 중 1인당 진료비가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하는 지역은 동두천·파주·안산·시흥·연천·고양·평택·안성·부천·광명·구리 등 11곳임

〈표 2〉 도내 시군별 노인 진료비 현황

	의료보장 적용인구	진료비	1인당 진료비		의료보장 적용인구	진료비	1인당 진료비
경 기	1,919,949	5,711,242,896	2974.6	안 성	36,212	111,862,087	3089.0
가 평	18,230	53,712,406	2946.3	안 양	90,738	258,083,208	2844.2
고 양	154,449	480,965,590	3114.0	양 주	37,007	105,834,561	2859.8
과 천	11,255	31,838,395	2828.8	양 평	31,439	89,617,729	2850.5
광 명	53,206	162,294,100	3050.2	여 주	26,782	78,686,307	2938.0
광 주	50,385	137,469,828	2728.3	연 천	13,023	40,648,122	3121.2
구 리	28,363	85,984,262	3031.5	오 산	22,997	68,247,054	2967.6
군 포	40,661	119,341,680	2935.0	용 인	147,598	417,378,957	2827.8
김 포	55,581	159,884,934	2876.6	의 왕	24,531	70,987,842	2893.8
남양주	104,832	311,190,601	2968.4	의정부	74,917	216,477,673	2889.5
동두천	20,609	67,223,777	3261.8	이 천	34,952	102,120,979	2921.7
부 천	128,057	393,046,088	3069.3	파 주	69,001	218,229,765	3162.7
성 남	155,605	452,113,480	2905.5	평 택	71,748	222,500,086	3101.1
수 원	148,984	442,230,350	2968.3	포 천	33,477	100,283,229	2995.5
시 흥	46,427	146,397,400	3135.2	하 남	29,467	86,312,694	2929.1
안 산	85,839	270,982,723	3156.8	화 성	73,577	209,296,992	2844.5

- 노인 진료비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,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고 전체 노인인구 중 초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노인인구의 1인당 진료비 규모가 크게 나타남

03

FACT CHECK

저소득층 신용정보조회, 생활보장 때문?

- 지난 3월 2일,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연체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*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
 - "지난해 말부터 단전·단수·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"는 것이 정부의 입장
 -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내 대상자를 추가 발굴할 것으로 기대
- 그러나 "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라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"는 반대이견 존재
 - 정부3.0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사례가 최근 확대되고 있으나, 개인정보 활용의 이면에는 인권침해의 위험이 존재
- 또한 우리나라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핵심은 발굴 수단의 한계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자체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도 다수
 - 실제 사회보장급여법 실시 이후 단전·단수·사회보험료 체납 등의 정보를 통해 20만명**의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되었음에도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7.9%에 불과한데,
 - 이는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다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정 등 제도권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
- 실제 절대빈곤율이 8~9%임에도 수급율이 2~3%의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준 제고에 더욱 효과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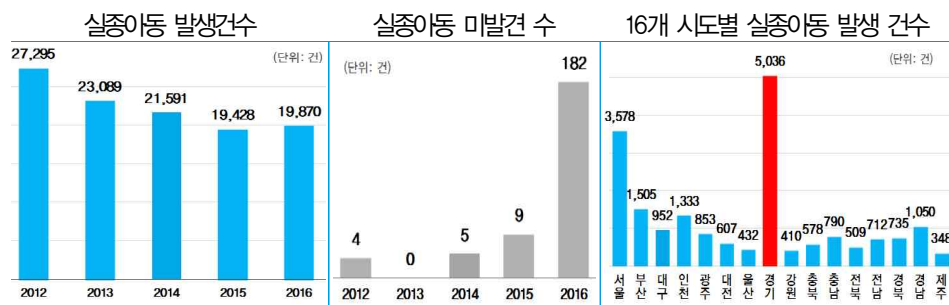
*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사회보장급여법) [시행 2015.7.1.] [법률 제2935호, 2014.12.30., 제정] 제정당시 '송파세 모녀' 사건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제정된 법

**참여연대,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은 인권침해

04

통계로 보는 복지

실종아동 발생 현황



자료 : 통계청(우·가운데) / 2015 경찰통계연보(좌)

- 최근 5년 간 실종아동* 발생건수는 지난 '12년 2만 7,295명에서 '15년 1만 9,428명으로 감소했다가 '16년에 소폭 증가(통계청, 2016)
 - 2016년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총 1만 9,870건으로 전년도 대비 442건 증가
- 지난해 실종된 아동 중 미발견된 아동의 수는 182건임('16년 말 기준)
 - 미발견 실종아동은 통계산정시점에서는 미발견상태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되기 때문에 매년 미발견 아동 숫자는 수시 변동
- '15년 기준 경기도 실종아동 발생 건수는 5,306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다 발생
 - 그 외 서울 3,578건, 부산 1,505건, 인천 1,333건, 경남 1,050건 순

*실종신고 당시 연령이 18세 미만인 아동